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70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양부남 · 박균택 · 김문수
이광희 · 이상식 · 김준혁
박수현 · 채현일 · 전진숙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물자동차 이외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

통상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은 다중의 왕래가 빈번하여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속한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도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에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순찰차는 이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순찰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주차된 순찰차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치안 수요 및 현장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이하 “순찰차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5항에 따른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치안 수요 및 현장 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이하 “순찰차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u>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① ----- ----- ----- -----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u><신설></u> <u>2. ~ 6.</u> (생략) ② · ③ (생략)	----- ----- ----- ----- -----. ----- ----- -----. 1. (현행과 같음) <u>2. 제7조제5항에 따른 순찰차 주차구획에 순찰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u> <u>3. ~ 7.</u>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